

노후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

신차 구입자	
① 성명(법인명)	②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
③ 주소(사업장 소재지)	④ 연락처
노후자동차	신차(감면 신청차량)
⑤ 차대번호	⑨ 차대번호
⑥ 자동차등록번호	⑩ 취득일
⑦ 최초등록일	
⑧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 여부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1조제1항에 따라 노후자동차 교체목적으로 구입한 차량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회사 (인)

작성방법

-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- "⑥ 자동차등록번호"란: 말소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.
- "⑧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 여부"란: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"Y"라고 적습니다.
- "⑩ 취득일"란: '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일'을 기준으로 적습니다.
-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노후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.
- 노후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차량임을 확인하는 것이나, 실제로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